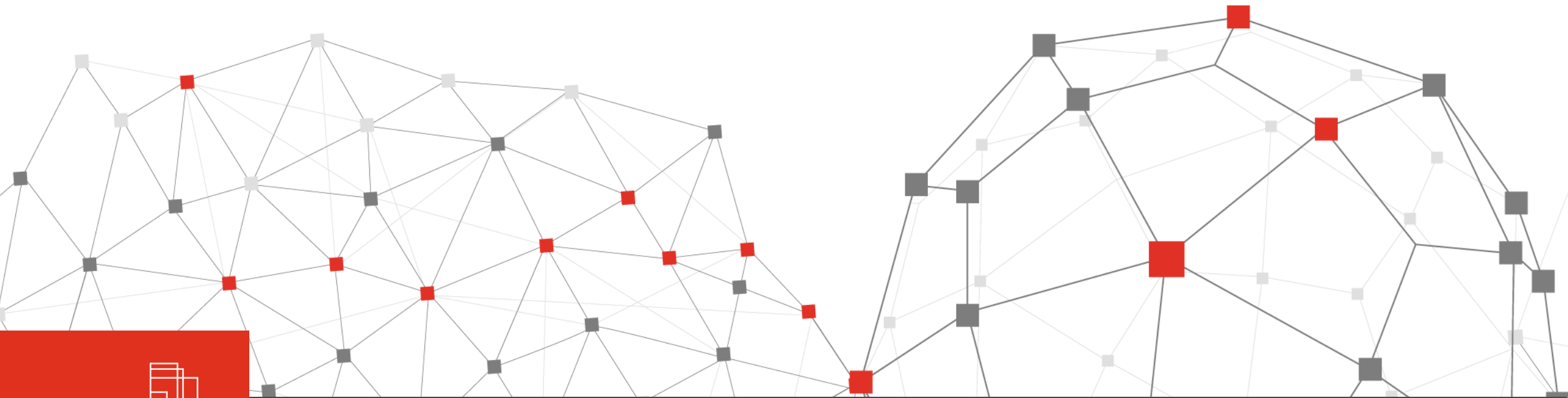


# COVID-19

##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시행령 확정



PwC 베트남 Newsletter

2020년 4월 10일

4월 8일,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세금 및 토지임차료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시행령 41을 발표했습니다. 동 시행령은 서명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의 요약입니다:

동 시행령은 다양한 사업 활동들을 영위하고 그러한 활동들로 2019년 또는 2020년에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 제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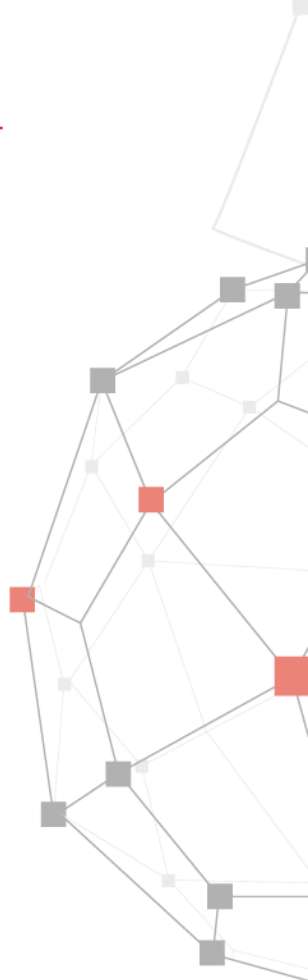
- 농업, 임업 및 어업;
- 식품 생산 및 가공; 방직; 의류 생산; 가죽 및 관련 제품 생산;
- 목재 가공 및 여러 종의 대나무 및 목재로 생산한 제품 (침대, 옷장, 탁자, 의자 제외); 직공예 제품 생산; 종이 및 종이 관련 제품 생산; 고무 및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생산; 비금속 광물로 만든 제품 생산; 금속 생산;
- 금속의 기계적 가공, 처리 및 코팅; 전자제품, 컴퓨터 및 광학 제품 생산; 자동차 및 기타 차량 제조 (이제 9인승 이하 자동차 포함);
- 침대, 옷장, 탁자, 의자 생산; 및
- 건설업

### 서비스업 부문

- 운송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 공급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사회적 지원 활동들; 부동산업;
- 노동 및 고용 서비스 활동들; 여행사, 여행운영업자, 여행 광고 및 기획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 활동들;
- 작곡, 예술, 오락 활동들; 도서관 활동들, 보존,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들; 스포츠 활동들; 오락 활동들; 영화.

### 기타 적용되는 부문/활동들

- 우선적으로 개발 대상이 되는 지원 산업 제품의 생산; 규정된 주요 기계 제품;
- 규정된 소형 및 극소형 기업들;
- 은행업 - 특정한 상황의 경우



상기 목록의 대상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 전반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들은 저희의 지난번 업데이트와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4월, 5월, 및 6월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업들에 대하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그리고 2020년 1분기 및 2분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업들에 대하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5개월 연장됩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수입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9년 법인세 최종 신고에 따른 납부 및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 기한이 각 법정 납부 기한들로부터 5개월씩 연장됩니다. 기업들이 2019년 기말 법인세를 이미 납부 완료한 경우, 그러한 기업들은 기타 다른 종류의 세금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무국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제출하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종속적 단위 및 지점들은 마찬가지로 상기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점들 및 종속적 단위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 개인 및 가족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저희의 이전 업데이트와 유사하게,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것이며, 이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들을 영위하는 개인들 및 가족기업들에 적용됩니다.

## 3. 연간 토지임차료 납부 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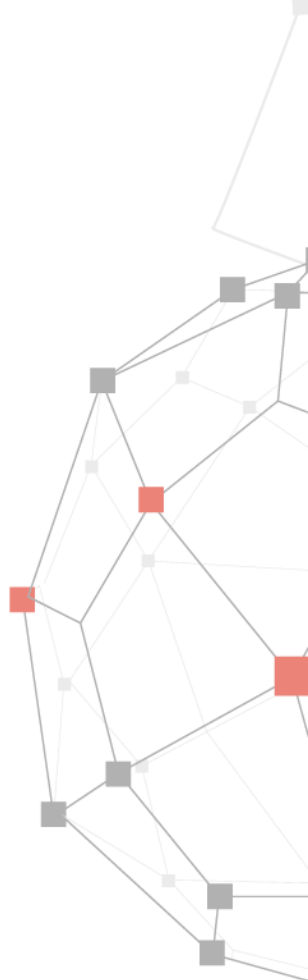
-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연 단위로 토지임차료를 납부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들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2020년의 첫 번째 납부에 대해 (2020년 5월 31일부터) 5개월의 연장이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령에 실수로 명시된 “2010년 5월 31일”은 “2020년 5월 31일”이어야 합니다. 재무부는 동 오타에 대해 알고 있으며 곧 수정할 예정입니다).

## 4. 적용 대상 범위 내/외의 사업활동들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 동 시행령은 다수의 사업활동을 보유하고/ 또는 다양한 토지임차 계약/결정문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모든 활동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및 토지임차료 납부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됨을 규정합니다.

## 5. 행정적 요구 사항들

- 동 시행령은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를 제출하는 지역세무국에 (시행령 41에 첨부된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출 기한은 2020년 7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들이 박탈됩니다. 제출은 전자적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모든 적용 대상 기간에 대해 모든 종류의 세금과 토지임차료를 포함하여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기업이 국가로부터 여러 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이러한 기업의 관할 지역세무국은 다른 지역의 관련 세무국에 동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 이는 납세자들의 자체 평가 개념이며, 세무당국은 동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리거나 확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 납부 연장 기간 동안 지연납부이자는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시행령 41은, 동 연장 기간 동안 만약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동 연장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판단하는 “근거”를 가진 경우, 세무당국은 동 납세자에게 연장을 무효화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고, 동 납세자에게 모든 세금, 토지임차료 및 이에 대한 지연납부이자의 납부를 요구할 것임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이 만약 미래의 세무조사에서 평가될 경우, 납세자는 또한 지연납부이자 및 행정 과징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Contact us

본 Newsletter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하노이 오피스:



**Nguyen Huong Giang**  
Partner – Tax & Legal services  
+84 24 3946 2246 Ext. 1502  
[n.huong.giang@pwc.com](mailto:n.huong.giang@pwc.com)



**Lee Moo Yeol (이무열)**  
Senior Manager, KICPA  
+84 24 3946 2246 Ext. 1010  
[mooyeol.lee@pwc.com](mailto:mooyeol.lee@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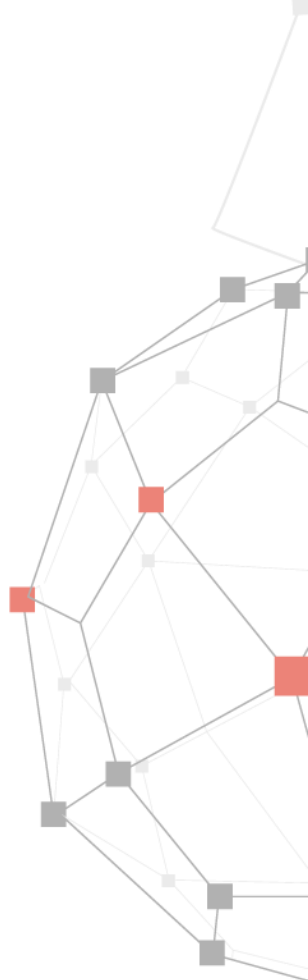
## 호치민 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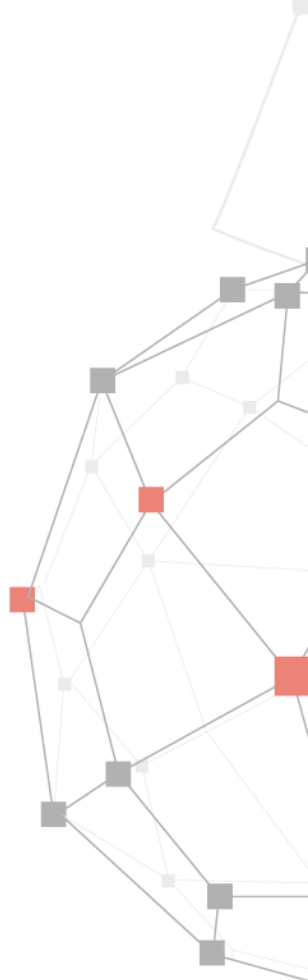


**Richard Irwin**  
Partner - Tax & Legal services  
+84 (28) 3824 0117  
[r.j.irwin@pwc.com](mailto:r.j.irwin@pwc.com)



**Jo Su Jin (조수진)**  
Associate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mailto:jo.sujin@pwc.com)





[www.pwc.com/vn](http://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https://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https://youtube.com/pwcvietnam)



[linkedin.com/company/pwc-vietnam](https://linkedin.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7 countries** with over **276,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http://www.pwc.com/vn).

©2020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structure.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